행정명령

법률 및 법규의 일부 조항의 유예 또는 수정 지속

본인은 뉴욕주의 모든 62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47호를 2012년 10월 26일에 발령하였습니다.

행정법 섹션 29-a에 의해, 특정 조항이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킨다면, 해당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이나 규정, 또는 그것의 일부를 정지, 변경 및 수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차량 등록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제49호를 2012년 10월 31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교통 인프라 복구를 촉진하는 법률 조항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제50호를 2012년 10월 31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뉴욕주 노인국의 규제조항을 유예 및 수정하는 행정명령 제56호를 2012년 11월 2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투석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법 조항을 유예 및 수정하는 행정명령 제57호를 2012년 11월 2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공중보건법의 조항과 NYCRR(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의 Title 10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제58호를 2012년 11월 3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다른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자동차 및 가정 난방 연료 제한과 관련된 법률 조항 및 규제 조항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제 59호를 2012년 11월 3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일부 보안요원의 권한과 관련한 법률 조항을 유예 및 수정하는 행정명령 제60호를 2012년 11월 3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가정간호와 관련된 법률 조항 및 규제 조항을 유예 및 수정하는 행정명령 제64호를 2012년 11월 5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뉴욕시에서의 학생 수송과 관련된 법률 조항을 유예 및 수정하는 행정명령 제65호를 2012년 11월 7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비상대피소와 관련된 법률 조항 및 규제 조항을 유예 및 수정하는 행정명령 제66호를 2012년 11월 8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과 관련된 법규를 유예 및 수정하는 행정명령 제67호를 2012년 11월 8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파상풍 예방주사를 확대하는 법령 및 법규를 유예 및 수정하는 행정명령 제68호를 2012년 11월 9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주 발행 문서 복사료 지급과 관련된 법률 조항 및 규제 조항을 유예 및 수정하고 일부 주 발행 문서의 만료 기간을 연장하는 행정명령 제69호를 2012년 11월 9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발달장애, 정신병 및 알코올과 약물 남용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법률 조항 및 규제 조항을 유예 및 수정하는 행정명령 제71호를 2012년 11월 11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보건법 조항 및 NYCRR의 관련 조항을 유예 및 수정하는 행정명령 제72호를 2012년 11월 11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아동 및 가정 복지, 보육, 청소년 재판, 가출 청소년, 청소년 노숙자, 성인 보호 서비스, 가정 폭력 희생자를 위한 거주 및 비거주 보호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제78호를 2012년 11월 20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주 계약 및 주 시설물 수리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제79호를 2012년 11월 20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다른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행정 명령 제56, 60, 64, 66, 67, 68, 71, 72, 78, 79호가 2012년 12월 25일까지 명령한 법률 및 법규 조항, 행정명령 제49호 및 제50호가 2012년 12월 30일까지 명령한 법률 및 법규 조항, 행정명령 제57호 및 제58호가 2013년 1월 2일까지 명령한 법률 및 법규 조항, 행정명령 제59호가 2013년 1월 3일까지 명령한 법률 및 법규 조항, 행정명령 제65호가 2013년 1월 7일까지 명령한 법률 및 법규 조항의 유예 및 수정을 지속하는 행정명령 제81호를 2012년 11월 20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공공손해사정인 허가와 관련된 일부 보험법 조항을 유예 및 수정하는 행정명령 제82호를 2012년 11월 29일에 발령하였습니다.

본인은 행정명령 제 69호를 2013년 1월 8일까지 명령한 법률 및 법규의 일부 조항의 유예를 지속하고 교사자격증 복사료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85호를 2012년 12월 4일에 발령하였습니다.

행정법 섹션 29-a에 따르면 법 조항 정지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주어진 상황 및 연관된 모든 사실들을 고려하여, 정지기간이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Nassau 카운티에 위치한 학군들의 2012-2013년 학년도 교육구세 납부 마감일이 원래 2012년 11월 10일경이었습니다

부동산세법 925-a항에 의거하면 뉴욕주 비상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카운티, 시, 타운, 마을, 또는 학군의 최고 행정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지사는 이자 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래의 학군세 마감일로부터 최대 21일까지 학군세 납세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 요청은 Nassau 카운티의 Franklin Square Union Free 학군을 대신해 주지사 사무실에서 접수하였습니다.

Franklin Square Union Free 학군 관계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비춰볼 때 이러한 연장은 대단히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지사는 행정법 제2-B조의 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그리고 모든 관련된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행정명령 제81호에 의해 연장된 법류 조항 및 법규 조항의 유예 및 수정은 다음과 같이 지속된다:

1. 행정명령 제56, 60, 64, 66, 67, 68, 72, 79호에 의해 발령되고 2012년 12월 25일에 만료되는 법률 조항 및 법규 조항의 유예 및 수정은 2013년 1월 24일까지 지속된다.

2. 행정명령 제71에 의해 발령되고 2012년 12월 25일에 만료되는 법규 조항의 유예는 2013년 1월 24일까지 지속된다. 단 정신위생법의 제31.27조와 관련 법규를 유예하는 조항과 NYCRR의 Title 14의 제633.8조, 제633.14조 및 제633.17조를 유예하는 조항은 지속되지 않는다.

3. 행정명령 제78호에 의해 발령되고 2012년 12월 25일에 만료되는 법률 및 법규 조항의 유예는 다음 사항에 핞 2013년 1월 24일까지 지속된다:

    a. NYCRR의 Title 18의 Part 441–443, 446–449, 451, 단 사례별 사회복지사업 연락을 완료하고 위탁 가정의 증명 또는 허가를 인증, 승인 또는 갱신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간 외의 지정된 서비스 또는 활동을 완료하는 기간과 관련된 경우 제외

    b. NYCRR의 Title 18의 Part 443

    c. 사회복지사업법 제390조의 하위항목 (2), 제390-a조의 하위항목 (3), 제461-b조의 하위항목 (2),단 유예는 지방자치단체, 가출 청소년 및 청소년 노숙자 프로그램,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거주 프로그램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d. 사회복지사업법 제459-b조와 NYCRR의 Title 18의 제408.6, 452.9, 454.5 and 455.4조

    e. NYCRR의 Title 18의 제427.1, 427.7, 427.9조

    f. 사회복지사업법 제153-k조의 하위조항 (2)(a) 및 제398조의 관련 법규, 단 유예는 공동 위탁 시설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g. 사회복지사업법 제398조의 하위항목 (6)(p)와 제409-a조의하위항목 (1), (5), (7), NYCCR의 Title 18의 제423.2조의 하위항목 (b)(16), 제423.4조의 하위항목 (b), 제430.9조의 하위항목 (c) - (j) 및 제435.5조

    h. NYCRR의 Title 18의 Part 404, 단 유예는 사회복지사업의 적격성, 서비스 승인 결정 및 재결정 기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4. 행정명령 제49호 및 제50호가 발령한 법률 조항 유예로 2012년 12월 30일에 만료되는 이 기간은 2013년 1월 29일까지 지속된다.

5. 행정명령 제57호 및 제58호가 발령한 법률 조항 및 규제 조항의 유예 및 수정으로 2013년 1월 2일에 만료되는 이 기간은 2013년 2월 1일까지 지속된다.

6. 행정명령 제59호가 발령한 뉴욕시에서 판매되는 난방 기름에서 유황분 제한과 관련된 환경보존법 제19-0325조 및 그에 따라 반포된 법규의 유예로 2013년 1월 3일에 만료되는 이 기간은 2013년 1월 18일까지 지속된다.

7. 행정명령 제65호가 발령한 법 조항의 유예로 2013년 1월 8일에 만료되는 이 기간은 2013년 2월 7일까지 지속된다.

행정명령 제82호가 발령한 법 조항의 유예 및 수정으로 2012년 12월 29일에 만료되는 이 기간은 2013년 1월 28일까지 지속된다.

행정명령 제85호가 확대 또는 발령한 법 조항의 유예 및 수정은 다음과 같이 지속됩니다:

1. 행정명령 제69호가 발령한 법 조항의 유예로 2013년 1월 8일에 만료되는 이 기간은 2013년 2월 7일까지 지속됩니다. 단 뉴욕주 세무국과 관련된 법의 유예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2. 교육법 제3006조의 하위항목 2의 유예로 2013년 1월 3일에 만료되는 이 기간은 2013년 2월 2일까지 지속됩니다.

나아가, 부동산 세법 제925-a조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본인은 Nassau 카운티의 Franklin Square Union Free 학군이 2012년 11월 10일 경에 내야 하는 학군세를 이자 또는 벌금 부과없이 2012년 12월 1일까지 내도록 기간을 소급 확대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

자필로 서명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